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www.humanrights.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사법기관에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 및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부여, 2014년 정당한 편의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추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15. 11.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토론회이니만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소통지원, 복지서비스 이용에서의 지원체계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우리 위원회는 장애차별 사건조사 권한을 인권사무소로 이관하고,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사안들에 대해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숙**

토론회 일정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4. 15.(금) 오후 3:00 ~ 5:30
- 장 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개 회	3:00 ~ 3:10(10분)	· 인사말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축 사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대표
< 제1부 발표 >		
발표 1	3:10 ~ 3:25(15분)	· 인권사무소 장애차별 조사권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발표 2	3:25 ~ 3:40(15분)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장애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안전권 분야) - 허미연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발표 3	3:40 ~ 3:55(15분)	· 지역기반 장애인 인권보장 시스템의 과제 및 방향 -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휴 식	3:55 ~ 4:10(15분)	휴 식
발표 4	4:10 ~ 4:25(15분)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발표 5	4:25 ~ 4:40(15분)	· 발달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나호열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제2부 종합토론 >		
종합토론	4:40 ~ 5:20(40분)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5:20 ~ 5:30(10분)	· 폐회

목 차

- 인권사무소 장애차별 조사권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7
권 혁 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13
(장애아동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 및 정보접근성 중심으로)
허 미 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지역기반 장애인인권보장 시스템의 과제 및 방향 19
임 은 자(영남사이버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2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는 지금, 대구지역의 환경적 변화와 고민)
김 시 형(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 발달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45
나 호 열(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부 록 55
 - 장애차별 진정사건 관련 통계자료



인권사무소 장애차별 조사권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1. 조사권 확대 배경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나서, 지역 내 장애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인권사무소의 장애차별 조사권 부여와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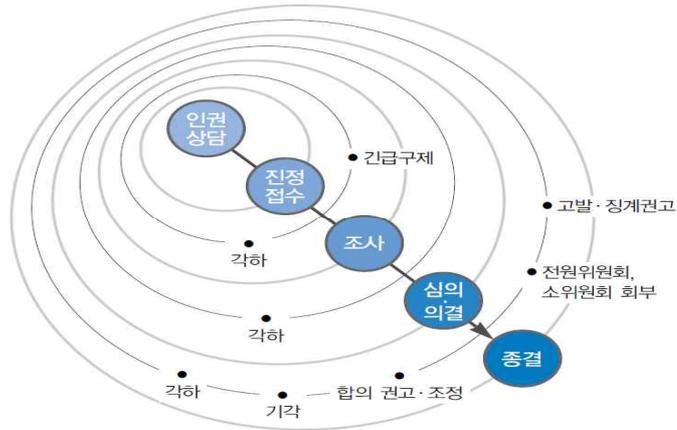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간 인력 등의 문제로 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오다가, 최근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인권사무소의 조사권 확대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2016. 3. 21.부터 장애차별, 국가기관, 학교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업무가 인권사무소로 이관되게 되었다.

인권사무소의 조사권 영역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장애차별,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제외)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구급시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지역보다 인권위(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2. 조사절차

< 위원회 조사절차 단계도 >



1) 각하

접수한 진정이 ①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진정인의 원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⑤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⑥ 진정인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⑦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⑧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⑨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각하 종결된다.

따라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이 아니거나,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이기는 하나 진정접수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거나, 재판·수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료된 경우에 각하 종결된다.

2) 기각

위원회가 각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①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건이 기각 종결된다.

3) 합의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4)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정제도 도입 취지는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결과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조정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구제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고발 및 징계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조사 중 해결

‘조사 중 해결’이란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진정과 유사한 기존 선례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면서, 피진정인에게 개선 혹은 시정하도록 해결 방향을 제안, 권유하여 가능한 신속한 시일 내에 진정 원인을 해소하여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금지하는 차별유형이나 내용일 경우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시정의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설득하여 진정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기각처리 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시정계획 혹은 시정완료 문서를 근거로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만족하여 진정취하 의사를 표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로 각하처리 된다.

<조사절차 단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처리진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①	합의 종결②	조사중 해결③					
2015년	1,084	416	215	17	-	19	179	201	662 (560)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7.9	-	8.8	83.3				
					51.7			48.3			
					38.4			61.1	-	0.6	

- ①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②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③ 조사중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또는 진정취하로 각하 처리한 경우임.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1) 장애인권 네트워크 구성

지역 장애인 인권의 요구를 수렴하고,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해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조사의 신속성 강화

이번 인권사무소의 조사권 확대로 장애인 차별 등의 진정사건에 대한 현장 접근성 및 조사의 신속성이 강화될 것이다.

3) 조사·인권교육을 통한 장애차별 사전 예방

장애차별 사건조사와 인권교육 업무가 인권사무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 차별 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장애아동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 및 정보접근성 중심으로)

허 미 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만 19세 이전의 장애아동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나 살펴보았을 때 장애아동의 주요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전제를 두고 살펴본다면 학교 안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른 보완체계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활용으로 나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는 아직도 보완하고 채워나가야 할 점이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감각장애인 중심의 의사반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동에 관한 조항을 구성함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아동 중에서도 장애아동은 취약한 집단 중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과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관한 조항은 제 34조, 제35조인 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아동의 취약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률로는 아쉬움이 크다.

많은 보완점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당장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장애아동의 재난발생시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이다.

세월호 사건이후 재난 발생 시 안전에 관한 확보의 필요성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어떤 부분보다 가장 취약한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중에 장애아동의 경우 재난발생 시 안전성을 확보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시, 도교육청이 있지만 매뉴얼만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방훈련의 경우 특수학급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급)의 학생의 경우 비장애 학생에게 의지하는 방식, 비장애 학생이 이동을 지원하여야만 하는 훈련방식이다.

이는 장애학생 스스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훈련을 기르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큰 무리수가 따른다.

또한 특수학교의 경우 비상대피로의 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은 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피훈련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학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소방훈련, 위기상황 대처훈련 등은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제공될 뿐이며, 이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상황으로 전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하철 사고 이후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어, 대구인근에서도 대구 안전테마파크를 통한 다양한 안전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관, 교육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듯 학교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는 [재해 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재해약자 대책,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해약자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해약



자 대응에 방재 매뉴얼 등 구체적 지침을 갖고 있다. 또한 재해약자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재해 시 요원호자의 피난가이드라인]에서부터 [재해약자 대응 방재 매뉴얼] 보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해약자 보호와 관련된 확립된 지침 및 관련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7월에 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한 장애 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중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장애인 재난관리에 대한 제도 및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부처에서도 장애인 재난관리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부재한 실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통일된 재난관리정책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난관리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피해자들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장애인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정보를 1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현장 대응 시 어려움이 많은 체계라고 지적을 하였다. (2015. 장애 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살펴보다라고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에 대한 체계마련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 중에서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더 강화된 체계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양한 재난대응에 관한 체계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 책임성 있는 체제마련을 위한 관련 법규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5년 4월 17일 이목희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



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하여 관련 법령의 장애인에 대한 별도규정이 명시될 수 있는 근거 및 시발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보완할 부분으로 장애아동의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을 위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장애인의 문자해독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애아동의 문자해독의 가능성을 두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라 보기 어려움이 있다.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흔한 사례로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버스노선, 지하철 노선 안내 및 현재의 위치 등 시각장애인, 문자해독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는 지원체계로는 이용하는 것에 한계점이 많다.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그나마 제공되는 몇몇 자료에서조차도 장애아동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자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3월 29일에 발달장애인 단체 연합체인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들도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였다. 이들은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을 제공할 것과 투표용지에 그림, 사진 등을 넣어 발달장애인들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하라고 요구하였다.



성인기의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문자로만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그들에게 무의미할 뿐이다.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외국인 등 특정 대상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팩토그램 개발과 연구 이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완점으로 재난발생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와 장애아동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에서도 장애아동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기반 장애인인권보장 시스템의 과제 및 방향

임 은 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된 올해로 8년째 접어들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목적)’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과연 얼마만큼 장애인의 삶속에서 그 의미와 영향을 미쳤을까?

분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삶에서 시작되어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내기 위해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어디서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렇게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을 기점으로 문화체육시설에서의 단계적 적용을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실질적인 전면적용이 시작되는 완성된 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대구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2011년 5월 대구시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장애인 인권증진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권리구제 방안 규정이 없고,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규정도 없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2015년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 2016년 상반기 계획수립 예정에 있다.

한편,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전국 최초로 대구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등 권리보호 업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다년간 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지역인권사무소로 이관되었다.

느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지역의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노력과 변화들을 볼 때 반가운 마음이 든다.

이제는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권보장 시스템이 하나씩 구축되어 가는데 그 내실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많은 역할을 할 대구시의 2016년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의 올해 추진 내용인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2016년도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 및 주요사업계획

○ 예산 및 장애인 수, 장애인시설 수

- 2016년도 예산 1,915억원(2015년 1792억 대비 6.9% 증가)
- 장애인 수 : 115,707명 (중증 25,225명, 22%, 발달장애인 9,869명 8.5%)
- 장애인시설 : 142개소



1) 발달·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강화

- 발달장애인 가족부담 해소
 - 장애인당사자 중심->장애인부모 및 가족지원으로 확대
 - 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 및 공공후견지원(480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보미과전, 휴직지원 196가구)
 - 장애아동언어발달재활서비스지원(2,664명)
 - 주간보호시설(39->40개소), 자립지원사업(4->6개소)
 -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1개소)
 - >2016년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초 마련
- 중증장애인 상시돌봄체계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3,210명 → 3,415명)
 - 1~3급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최중증장애인 등 돌봄 추가 지원
 - 최중증 1일 24시간 확대 등 위기장애인 상시 돌봄 지원
 - 최중증·독거·취약계층 등 위기 장애인 실태조사

2)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지원

- 저소득장애인 기본생활보장
 - 장애인연금 수혜자 적극 발굴 및 지원(45,251명)
 - 장애인 연금 17,510명/장애수당 18,941명/시비특별지원 8,800명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부담해소 및 교육기회 보장(4,475명)
 - * (시민행복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1개소),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 시설 거주장애인 자립전환 지원

❖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의 자립 전환

▶ '15년(10명) → '16년(20명) → '17년(35명) → '18년(35명) → '19년 이후(200명)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자립생활가정(3→13개소), 체험홈(6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7개소)
- 탈시설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6→7백만원/1인)
- 장애인생활 및 이동편의지원
 - 노후 복지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31개소, 55억원)
 - 장애인 맞춤형주택 리모델링 지원(25가구)
 -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조절, 보조손잡이 설치 등
 - 저소득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보조기구 교부 18종, 수리 지원 1,557명)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특별수송차량 운영(18개소/37대)
- * (건설교통국) 저상버스 110대, 나드리콜 71대(특장차 11, 개인택시 60대) 증차, 음향신호기 400대, 무장애 횡단보도 2개소(큰장, 동산네거리)

3) 장애인의 일자리확대 및 고용환경 조성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716명)
 - 복지일자리(380명), 일반형일자리(252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84명)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 직업재활시설 확충(35 → 38개소), 직무지도원 확대(5 → 10명)
 -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16. 6월)
 - 장애인 일반고용시장 진입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 개최(첫회)
 - * 장애인고용촉진 업무협약 : '15. 4. 10 / 대구광역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의무고용확대

❖ **[법정 의무고용비율]** 지자체·공사·공단(3%), 50명 이상 민간기업(2.7%)
 ❖ **[대구 '15. 9월말]** 시, 구·군(4.07%), 공사·공단(3.78%), 민간기업(3.11%)



○ 장애인 공공부문 의무고용 목표 상향 추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 구·군	4.17%	4.30%	4.60%	4.80%	5%
공사·공단	3.34%	4.00%	4.30%	4.70%	5%

* 의무고용목표(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14.11.10 제정)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판매촉진

○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 [0.8%(23억원) → 1%(28억원)]

○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지원 및 홍보 전시회

– 생산품 지정시설 13개소, 20개 품목(LED, 사무용지, 제과제빵, 비누 등)

4) 장애인 인권보호 및 통합지원 인프라구축

▪ 장애인인권 및 피해자 쉼터 설치

❖ 법 시행('08.8월) 이후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진정) 증가
 ▶ (대구) '08년 48건 → '14년 141건으로 약3배 증가

○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와 권리구제 및 피해자 보호 전담기구

– 인권센터: 장애인 인권·법률상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지원

* 2016년 4월 의회 상정준비, 7월중 개소예정

– 피해자쉼터 : 피해자 긴급보호 및 상담치료

○ 장애인인권 조례 개정(3월) 및 4월 11일 공포예정

▪ 장애인인권침해예방강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홍보(동영상·리플렛 제작)

○ 시설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연1회)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20개소/110명)

○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연 8시간)

▪ 장애인통합지원 다목적회관 건립추진 (2017-2018)

* (2016년) 수요·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기본계획(안) 수립



3. 대구시장래인 인권보장 핵심 시스템 : 장애인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과제

먼저,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과제에 대한 언급에 앞서 2016년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보면, 2016년 대구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내용은 4개 목표 하에 제시된 세부과제 중 실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인권보장 및 통합지원 체계구축의 목표 하에 3개과제로 ‘장애인인권센터 및 피해자 쉼터 설치’, ‘장애인인권침해예방’, ‘장애인 통합지원 다목적회관 건립’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생활권, 노동권, 자립권 등을 아우르고 있는 듯하나 지원대상이 소수이며, 지원내용 또한 미흡하다.

현재 대구시의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장애인 맞춤형택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25가구로 극소수로 장애인의 자립에서도 중요한 장애인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의 규모로는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어, 확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재가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노동 및 육아 등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므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에는 장애인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긴 하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일시 및 긴급보호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인권침해 피해 쉼터의 운영에 고려하여 기존 피해자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종사자의 이해교육 등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의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장애인인권보장 기본 계획(안) 맨 앞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분야에서 장애인인권센터 및 장애인 피해자 쉼터 설치 등을 올해 수립계획 하에 있는 과제에 속한다.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이 추진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어떠한 형태로 올해 과제가 추진이 될 것인가 사뭇 기대와 걱정이 된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서 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Right Based on Approach)’ 장벽 없는 대구 만들기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배제되어왔던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활동을 통한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욕구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제언했다는 것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대구시 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안)에 따라 6개 분야의 정책과제 즉 ‘권익보호와 차별시정’분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철폐’라는 목표와 ‘접근권·이동권, 자립생활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문화권’ 분야는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목표수립으로 탈시설을 포함한 자립생활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명기한 점은 타 시도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장애인인권센터는 특히 그 첫 번째인 ‘권익보장’의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실조사,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과 역할의 차별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나가며, 장애인인권침해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및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행사로 많은 차별시정에 기여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



제를 당사자와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인권센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다. 즉, 판단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인권센터는 옹호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인권센터가 특히 더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헌신성,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판단자가 아닌 옹호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주체면에서는 반관반민간의 성격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문센터를 만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운영주체가 민간이라고 하여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인권센터가 단순히 교육과 홍보의 거점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법률상 장애인인권센터 자체에 대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민간에 위탁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서울지역과 다른 대구지역의 사실상 장애인 인권교육/홍보단체 이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선적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조사/관리구제, 교육/홍보 등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센터의 기능을 권리구제에 무게를 두게 된다면, 상담의 창구를 다양화 하고, 장애인 인권 교육과 홍보의 인프라를 지금보다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민간 장애인단체의 차별상담 및 대응, 인권 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단계에서 꼭 유의해야 할 점¹⁾을 언급하고자 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장애인 복지시설 등)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공공기구로 구성되거나 공적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민간단체에 의하여 옹호가 이루어 질 것, ②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할 것, ③ 서비스 제공기관이 권리옹호제도를 인지하고 장애인(거주인)에게 입소시 공지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줄 의무, 신고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 등을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권리구제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권리침해 징후가 있을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할 것, ⑤ 피해자를 피해 상황 또는 가해자로 부터 분리하고,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를 행할 수 있을 것, ⑥ 법에 의한 조사권한이 부여될 것, ⑦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인력에 의해 운영될 것, ⑧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⑨ 권리옹호기관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주체가 결정되든 장애감수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고민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올해 대구시 장애인인권보장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그야말로 대구시의 장애인인권 보장시스템 잘 구축되고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인권보장관련한 대구시의 계획과 사업에 대해 장애인 및 시민들 대상의 대시민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위한 역량강화와 적극적 참여

1)김예원, “지역기반의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및 역할”, 박숙경,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항상적 감시 및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으로 위해 누구보다 장애인 및 가족 스스로의 노력과 활동으로 많은 결과물을 획득해 왔다. 하지만 그 또한 일부의 장애인단체나 기관에 편중되는 운영과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장애대중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스스로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예원, 지역기반의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및 역할, 2015 장차법 토론회자료집.
노금호, 대구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토론, 2015 장차법 토론회자료집.
조한진,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2015 장차법 토론회자료집.
2016년도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정책 및 주요사업, 대구시내부자료.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는 지금, 대구지역의 환경적 변화와 고민)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들어가며

1998년 9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결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의 요구가 본격화 되고, 그 노력의 결실로서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음. 이에 같은 해 11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등의 업무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함.

2007년 4월, 한국 최초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제정되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라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15년까지 8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시행 첫해 1175건이 접수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장애인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창구가 마련되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옹호기관이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대구에서도 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증진조례)』가 제정되었음. 그러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상담, 신고 시스템 운영과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제정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2012년 11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김대성, 이재화 시의원과 함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마련과 인권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 제언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장애인권리옹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권증진조례의 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방향 등을 제언하였음.

또한 2014년에는 인권증진조례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연구책임자: 대구대학교 조한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의 설치 및 필요성이 제출되었음.

그러나 지역 내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예방 및 권리구제는 요원한 상황임. 2015년 대구지역내 장애인거주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지역 내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치 사항들로 인해 근본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역 상황 속에서,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이에 지역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시스템이 마련되었음. 또한 대구인권사무소의 조사권 확대와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리옹호 기관과 체계, 그리고 권한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고, 실질적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 풀뿌리 장애인 인권상담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함.

1.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의 기능 확대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조사권을 중심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부산·대구·광주·대전 총 4개 지역에 지역인권사무소가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각 지역 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지역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지역 내 인권사무소가 설립되었음.

2007년 7월 대구인권사무소가 개소 당시 주요 업무는 ▲지역 내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문화행사 ▲인권단체협력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식 업무는 아래와 같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3.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4.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5.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7. 위원회의 조사 지원 8.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9.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그 동안 대구인권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음.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기본적인 부분이며, 조사권한이 없어 상당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그



침해 수준이 상당함에도 즉각적 조사와 대응이 어려워 권리구제가 힘든 부분이 많았음. 2014년 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피해당사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 나이가 많아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에 조사권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조사관이 내려오는 데만 3주의 시간이 걸려 하는 수 없이 민간단체에서 초기상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장애인차별 진정사건도 물리적 거리 때문에 메일이나 전화상으로 파악하고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음. 마침내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인권사무소로 조사관 1명을 파견하고 이에 따라 조사권을 확대하여 지역인권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4명의 직원이 조사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고 함.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권이 확대가 됨으로서 지역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중앙에 조사권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한명의 조사관이 100건 정도의 조사업무를 처리했다면 지역조사관은 그에 비해 처리 하는 조사업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진정 건수의 처리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런 지역인권사무소 조사권 확대에 따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관의 인권감수성과 적극성을 담보해 내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되려면 조사관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차별을 판단하는 판단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옹호자로서의 적극적 조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소위원회는 본청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한계지점임. 아무리 조사관이 업무 처리를 빨리 하더라도 본청의 차별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임에는 변함이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소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적어서 결정이 미뤄지게 될 수밖에 없음 상황에서 여전히 권리구제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다는 우려지점이 있음.

그렇다면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권이 제대로 기능 하려면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관의 적극성 확보임. 이러한 적극성을 확보하려면 조사관의 신분 보장은 물론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조사관이 차별소위원회를 소집 요청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소위원회도 지역 구성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음. 즉, 조사권만 확대 된다고 해서 권리구제가 제대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려면 차별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기능까지 지역에 확대가 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2.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권지원 기능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방향 :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전국장애인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의 발달장애인지원 체계를 접하면서 2012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출범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14년 11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음.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2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복지지원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함.

발달장애인법 제8조부터 제17조에 있는 조항을 제 2장 권리의 보장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이 부분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소통지원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음.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담조사제와 현장조사 부분이며, 다른 조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자기결정권 보장 ▲정당한 편의제공 ▲형사상 절차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조항들로도 대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기관 중 공식적인 조사권한이 생긴 것은 유의미 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역시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 받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 함.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업무를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임무는 아래와 같음.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의 임무에서 주목할 부분은 변호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지원을 들 수 있으며, 실제로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권리옹호팀장 채용공고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같은 구성은 미국의 P&A 시스템과 유사하며 현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도 이와 같이 변호사를 두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자문 등을 통해 권익옹호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됨.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법조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임.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대부분이며, 미국처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필수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담보하는 권리옹호 활동은 어렵다고 보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 변호사가 있어 제대로 된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 해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권감수성이 없는 권리옹호 활동은 무의미 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전담조사제 역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담보되어야 하겠지만 기존 인력에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검사 중에 발달장애인 관련사건 유경험자에게 그 역할이 주어질 것이며, 사건의 수사과정, 해결과정 등에서 얼마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하여 진행했는가에 따라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결과나 과정은 무시 된 채 수적인 성과 중심으로 역할이 맡겨지기 쉽기 때문임.

그러면 조사권과 전담조사제가 기능을 하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이 필요 함. 첫째는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내는 활동이 필요 할 것이며, 둘째는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와 협력 망을 구축하는 활동을 통해 고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바로 독립성이 확보 되어야 보다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독립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곳인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지원 체계 모델을 개



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나갔으면 하는 바임.

3. (가칭)대구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기능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방향 : 지역 민간 장애인 인권상담 단체 중심에서

우선, 지역사회에 장애인인권센터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대구 지역에서 장애인차별상담과 대응 그리고 권익옹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민간 장애인 인권상담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만들어 지는 것이기에 지역 장애인의 차별예방과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인권증진 사업을 통한 전반적 장애시민의 인권 수준이 증진 될 것임.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가 되어있고, 올해도 설치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 하지만 권익옹호 기관의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그 차이가 명확하며, 권익옹호기관의 운영방식은 크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민간 단체 위탁형태와 지방정부의 직접운영형태, 그리고 순수민간단체 운영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장애인인권센터 등 권익옹호기구 설치규정이 있는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기도	광주시,안성시,오산시,이천시,포천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권리옹호기관

조례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	서울장애인인권센터, 경기장애인인권센터, 성남시장장애인권리증진센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대전장애인인권센터, 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조례 설립근거가 없는 기관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시흥시장장애인인권보장상담센터

조례근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현황

기관명	주요사업	설립일	운영형태 (위탁기관)	2015예산 (2014예산)	조직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권리구제 인권침해예방 인식개선교육 등	2010.2	민간위탁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300,000천원 (150,000천원**)	총 5명 센터장1, 팀장1, 변호사1, 간사2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권리구제 실태조사 및 교육 정책연구	2012.1	민간위탁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179,367천원*** (163,000천원****)	총 6명 센터장1, 팀장1, 직원4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권리구제 실태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연구개 발	2013.11	민간위탁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250,000천원** (250,000천원**)	총 6명 센터장1, 팀장1, 변호사1, 팀원3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조사·구제 교육사업 상담조사 등	2014.2	민간위탁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317,316천원*** (195,000천원****)	총 6명 센터장1(비상근), 팀장1 변호사2, 주임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권리구제 실태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연구개 발	2008.4	민간위탁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168,000천원**** (158,000천원**)	총 5명 센터장1, 팀장1 간사3



기관명	주요사업	설립일	운영형태 (위탁기관)	2015예산 (2014예산)	조직현황
부산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센터	권리구제 실태조사 및 교육 정책연구	2006.2	민간위탁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34,000천원** (34,000천원**)	연구소 조직 내 인권센터관련업무 팀장 1명
대전시 장애인인권센터	권리구제 자립생활지원 교육	2010.1	민간위탁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38,000천원*** (38,000천원***)	소장1, 직원8 (인건비1명만지원)
성남시장래인 권리증진센터	권리구제 정책사업 인식개선교육	2012.7	민·관합동운영 (분당우리 복지재단)	373,728천원*** (338,807천원***)	총 7명 센터장1, 팀장2, 직원4, 공무원1 (공무원은 초창기 파견, 현재 없음)
전라북도익산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권리구제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교육	2014.2	민간위탁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150,000천원** (150,000천원**)	총 3명 센터장1, 팀장1 팀원1
전라북도전주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권리구제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교육	2014.2	민간위탁 (전국장애인부모 회)	124,450천원*** (150,000천원***)	총 3명 센터장1, 국장1 팀원1
울산북구 장애인인권센터	권리구제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2013.9	민간위탁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50,000천원** (50,000천원**)	총 6명 센터장1, 팀장1, 직원4 (인건비 1명만지원)

참고 : 도 및 시군 인권조례를 근거로 운영 되는 기구
 : 설립일은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이전 단체의 설립일자 기준
 자료 : 주요사업, 설립일, 운영형태는 이정주, 박윤근(2014)자료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외
 (2015)에서 참조하여 작성
 * 박윤근, 한은영(2014)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외(2015)
 *** 서울시(2015), 전라북도 전주시(2015), 전라남도(2015), 성남시(2015), 대전시(2015)
 **** 해당기관 및 해당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문의

2015 경북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정책보고서에서 발췌

위 표에서처럼 권리옹호기관은 크게 지자체 직영형태, 민간위탁형태,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공공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조사권과 접근권 등 관련한 권한들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이라는 위치로 인해 좀 더 용이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차별의 주체가 되어 버리게 되면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수탁기관의 인권감수성과 투명한 운영, 그리고 활동역량 등에 대하여 과연 검증된 단체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복지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인권센터 수탁의 경우 복지부의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권센터를 모두 수탁 받아 결국 단체 하나가 운영되는 모든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관련한 활동에 대한 경험과 인권감수성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한 단체에 치중되어 위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음. 그래서 명목뿐인 장애인인권센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오고 있으며,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대구지역에서 다양한 권리 옹호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임. 아래는 그동안 해왔던 권리옹호 활동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권리옹호 활동 주요연혁

■ 2005년

- 5월 13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기인 대회
- 8월 25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립총회
- 9월-11월,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

■ 2006년

- 4월-6월, 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운동(공동대표단체)
- 9월, 주거취약계층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장애인 주거권 부문 담당)
- 12월, 대구시 활동보조인 시범사업 평가 및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07년

- 2월-12월, 대구시 교통약자 등에 관한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연대 활동
- 4월-5월,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지역사회 연대활동(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11월, 차별에 저항하는 제2회 장애해방학교 개최

■ 2008년

- 2월, 장애인 권리침해구제 사례회의 전문위원 선정
- 4월, 대구역 네거리 횡단보도 미설치에 따른 차별 사건 대응 및 개선



- 7월, 장애여성영화제 “불만 있어요!?” 개최
- 9월,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연대 공식 제안 기자회견 개최
- 9월,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입주 반대 사건 대응 및 개선
- 12월, 올바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1차 지역사회 열린 간담회 개최

■ 2009년

- 1월, 대구 사설치료실의 캠프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아동사건 대응
-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맞이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 5월-6월, 대구시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협력(참관 및 현장자문)
- 5월-12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시 장애인권 친화적 자치법규 연구팀 참여
- 7월, 대구 첫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개통
- 8월, 청소년 수련관 내 장애인 수영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거부 사건 대응 및 개선
- 12월, 거주시설 내 CCTV 설치에 의한 거주인 사생활권 침해 사례 대응 및 개선

■ 2010년

- 1월, 전국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선정 ‘최고 일꾼상’ 수상
-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맞이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 5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직원의 성폭행 사건 대응 및 개선
- 5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살기 좋은 대구 만들기(현. 장애인인권조례)’ 조례안 연구-제안활동
- 5월-11월, 전국 장애인미신고시설 실태조사 협력(대구경북권역 총괄)
-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실시
- 10월, MBC PD수첩과의 대구 애락원 내 한센인의 인권현실 기획취재 및 방영
- 10월, 대구 장애인 인권영화제 “변(變)화를 변(辯)하다” 개최
- 11월, 중학교 통합학급 내에서 벌어진 장애학생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 대응 및 개선

■ 2011년

- 1월, 청각장애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괴롭힘 사건 대응 및 개선
- 2월, 장애인 최저 생계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인 시위 실시
-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맞이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 5월, 2012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활동(교류단장)
- 7월-9월, 장애인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기초/심화) 실시
- 10월, 대구지역 장애인 인권강사단 모임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결성(사무국 주관단체)
장애인당사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11월, 대구경북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단체 간담회 개최
- 11월, ‘도가니’ 사건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0만 시민청원운동 진행
- 12월, 대구경북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네트워크 결성제안 및 발족(사무국 주관단체)

■ 2012년

- 1월,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의 지적장애인 폭행사건 대응 및 개선
- 1월, 은행의 장애인에 대한 대출상담 원천 거부 사건 대응 및 개선
- 3월, 대구경북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정기 사례회의 실시



- 4월/12월, 총선 및 대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내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활동
-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맞이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 4월-9월, 대구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욕구조사 협력(연구 자문)
- 6월, 장애인 인권교육강사 심화 세미나
- 7월, 대구경북 장애인차별상담가 보수교육 실시
- 8월-9월, 인권위 거주시설 장애인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협력(대구경북권역 총괄)
- 10월, 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대구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개선 촉구 활동
- 11월,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마련과 인권증진조례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 제언대회 개최

■ 2013년

- 2월, 한국-일본 정신장애인 인권현황 간담회 개최(교토 리츠메이칸대학 스자쿠 캠퍼스)
- 2월-9월, 동성로 상점들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에 대한 불법점유물 규정 및 철거 사건 대응 및 개선
- 3월, 대구경북 장애인차별상담가 보수교육 실시
-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맞이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 4월, 대구 장애인 특수교사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제도이용 거부에 따른 대응 및 개선
- 4월, 대구장애인인권센터 준비위원회 결성 및 소식지 1호 발간
- 7월-8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기초/심화) 실시
- 10월, 특강 “UN 장애인권리협약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개최

■ 2014년

- 3월, 3.8여성의 날 맞이 특강 “여성운동과 장애여성의 권리” 진행
- 4월, 장애인 권리옹호학교 개최
-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맞이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 4월-9월, 대구미술관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서비스 미제공 사건 대응 및 개선
- 4월-12월, 2.28공원 내 청소년무대 경사로 미설치 사건 대응 및 개선
- 5월, 2014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 공약화 촉구 활동 (직권조사/대리소송/법률지원 등 권한을 가진 장애인인권센터 및 피해자 쉼터 설치 등)
- 6월, 대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폭행 피해 사건 대응 및 개선(대구인권사무소 공동협력)
- 6월-12월,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협력(공동연구원)
- 7월, 대구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대구인권사무소, 대구선관위)
- 9월,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 캠페인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실시
- 10월-12월, 경북도 장애인 이동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참여·협력(공동연구원)

■ 2015년

- 1월~현재, ‘권익옹호쉼터’ 개설 및 운영
- 1월-5월, 사단법인 두루 재정·법률지원 사업 “장애인, 교육의 중심에 서다” 선정 및 수행
- 3월-4월, 장애인 인권교육강사 심화 워크숍
- 3월-12월,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사업” 선정 및 수행
-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맞이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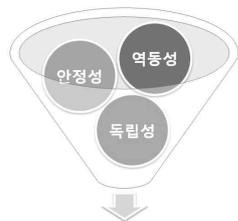


- 5월, 장애인 권리 법률학교 개최
- 5월-7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기초/심화) 실시
- 6월,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 노동력 착취 등 비리·인권침해 사건 대응
- 8월-12월, 장애인당사자 스토리텔링 모임 구성을 통해 장애인권동화책 ‘까칠이와 까미의 미로미로별 여행’ 제작 및 배포
- 11월-현재,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및 대응

민간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장애인당사자와의 교감, 접근성 등을 갖고 있으며, 성과적인 면에서도 진보적인 면들이 있음. 이러한 공공모델의 수립 전 민간에서의 시범적 운영 시도 등은 장애인 인권 및 복지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접근과 해결과정에서의 민간단체는 권리옹호 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서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등의 역동성으로 함축되는 장점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이자 한계점으로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문제에 대한 상황적 맥락과 해결의 방향이 장애인당사자의 진술에만 기대 자칫 편향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임.

또한,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행이 제한되거나 확장되기 어려운 제반여건이라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한국의 제도적·문화적 한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이 가해 측일 경우 등에 접근이 제한되거나 외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민간의 장점+공공의 장점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적극적 권리옹호체계

즉, 안정되지 않으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민간단체의 장점을 살려 보

전문성을 민간단체의 장점을 살려 보



장반기 어려우며, 제도화로 비교적 안정될 경우에는 ‘안정화는 곧 독립성 훼손’이라는 한국식 사회구조의 독특한 문제점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는 벌어지고, 접수되는 끊임없는 차별사항들 마다 고군부투 할 수 밖에 없으며 매번 벌어지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노하우를 지닌 인력들을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거칠게 표현하며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민간단체의 접근성, 역동성과 같은 장점은 살리고, 한계인 안정성과 법률적 권한은 보완하는 전문적인 권리옹호 기관 설치가 필요 함.

또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 예산은 각 지자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임, 그러므로 장애인인권센터의 주인은 장애인당사자 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중심의 상담이나 대응이 이루어 져야 함. 그럼에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인권센터의 범위와 역할을 축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심각하게 검토되고 논의 되어야 함.

4. 민간 풀뿌리 장애인 인권상담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확대 필요성

현재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침해, 차별, 학대 등의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나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와 같은 민간권리옹호기구 등의 상담기관을 찾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행정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지자체 내의 포괄적인권옹호기구에 상담 요청.
- 형사사법절차를 위해 경찰서 찾음.
-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이 모든 장애인에게 다 가능하지 않음. 특히 인권센터나 상담기관의 경우 아직 지역별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당사자의 의지로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많은 상담 및 민원으로 인해 오랜 시간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 그 밖에 형사사법절차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개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이해하며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경찰, 검찰, 법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히려 조사나 판단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움.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이나 학교의 인권침해는 그 수위도 높거니와 외부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대응방법을 찾아가기가 매우 힘겨운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실을 쉽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임.

또한, 장애인권익옹호 활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탈시설과 자립생활임. 탈시설 지원체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권리옹호체계임. 시설에서 나온 당사자 역시 생활이 익숙함에 따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생활자체에 대한 지원임. 하지만 권익옹호는 장애인당사자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상황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 됨.

그러하기에 민간 풀뿌리 장애인 인권상담 단체를 육성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자체와 장애인 단체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임.



발달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나 호 열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I. 서론

발달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인과,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폐성 장애인을 뜻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총 장애인의 수는 2,494,460명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203,879명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대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의 수는 115,707명이며, 그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9,951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적장애인이 8,980명으로 7.8%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971명으로 0.8%를 차지하고 있다(대구광역시, 2016).

발달장애인은 이처럼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즉,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의 손상으로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고 의사표현과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함은 물론 상황에 대한 자기결정력도 취약하다. 이런 상황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없어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평생에 걸쳐 누군가



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심석순, 2015).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및 관련단체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이에 국회는 발달장애인법을 2014. 11. 19.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5. 11. 21.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 가장 이슈화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아본 뒤 이의 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상 주요내용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알아 본 후 발달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지역사회 내 대표적 인권침해사례

1.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이 사건은 본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돌본다는 미담으로 ‘가락시장의 거지목사’로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후원금으로 모금한 거액을 횡령해 본인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장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들고 다수의 장애인을 시설 내에 가둔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임상태에 두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40여명의 이용자를 적게는 단 한명이 관리하도록 하고 욕창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내부에서 조악하게 치료하게 사망하게 만들었고, 곰팡이가 핀 침구류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 등 학대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시설 내 학대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장애인 학대사건의 접수로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각 단계에서 권익옹호기관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분리된 이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시설생활을 계속하여야 하였다는 점이다.



2. 염전노예사건

국내외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던 염전노예사건은 지역사회에 ①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관행적으로 장애인 학대가 행해졌고, ②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속이거나 유혹하여 염전으로 유인했고, ③ 직업소개소와 직업소개소에 장애인을 넘기는 브로커가 직업적으로 존재했고, ④ 많게는 20년 이상 강제노동이 일어났고, ⑤ 지역적 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특수성을 이용해 감금이 일어났고, ⑥ 폭언과 폭행 등 언어적·신체적 학대가 일어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서로 묵인하고 방조하였고, ② 총 20건의 형사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고작 6건에 불과하고 13건은 집행유예, 1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③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가 쉴 곳이 없어 일괄적으로 노숙인 시설로 보내 결국 시설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신원을 보호해 주지 못해 가해자가 시설로 찾아와 글을 모르는 데도 합의서를 가져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 형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김강원, 2015).

Ⅲ.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법의 대표적 내용으로는 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이를 위한 ②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③ 현장조사, ④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있고, 이러한 지원체계의 총괄을 위한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있다.

1)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발달장애인법 제9조 제1항).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다. 하지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약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쉽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 발달장애인은 가정, 시설, 기타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폭행, 상해,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할 경우 이를 방어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또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해당 범죄를 수사하고자 해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발달장애인법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서로 협조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발달장애인법 제16조).

4)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활동지원급여, 휴식지원 등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발달장애인법 제18조). 그러나 이 역시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스스로 신청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러한 신청의 편의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발달장애인법 제18조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발달장애인법 제19조 제1항)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발달장애인법 제20조)

5) 위에서 본 발달장애인법 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발달장애인법 제33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발달장애인법 제34조 제1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등의 업무(발달장애인법 제34조 제2항)를 수행한다.

IV.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1. 의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인 법의 목적이 실제 발달장애인의 삶 속에서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자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조기발견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완화와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함을 물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을 경감시켜주고 권익옹호와 복지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담을 전담하기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역할로는 발달장애인이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지원, 공공후견제도, 개인별지원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2. 권리구제절차

위에서 보았던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이나 염전노예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초동수사에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발달장애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만일 위 두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진술조력인, 보조자 등으로 참여하였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발달장애인의 권익 또한 더욱 잘 옹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대상 범죄를 조사하고 발달장애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법을 진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역센터로 신고되거나 경찰로 신고되어 센터 직원과 경찰이 함께 범죄를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의 신변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형사·사법절차 지원

위의 두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다른 점은 경찰, 검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본인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조력인, 신뢰관계인 등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의 절차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고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센터 직원을 참여시키는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공공후견제도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다. 하지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약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쉽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5. 개인별 지원절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급여, 휴식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위에서 보았던 권리구제절차 후에 발달장애인이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이 일일이 찾으려 지원 신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기관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연계해 주는 개인별 지원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V. 지역사회의 역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대표적 구성원들로는 ①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② 지역사회 주민, ③ 교육기관, ④ 정부행정기관 등이 있다.

1.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많은 장애인 관련기관들이 장애



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대변하지는 못 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요구할 수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립 및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 관련기관도 당사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주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같은 지역사회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발달장애인에게 배려가 필요한 부분을 배려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기초를 다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어느 권리보다도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분야보다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교사들의 배려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원만한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과 더 많은 기구 등의 물질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은 교사들이 발달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식하고, 더 많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발달장애인이 불편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행정기관

위에서 살펴보았던 인식개선사업, 발달장애인용 기구, 시설의 확충 등은 모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행정기관은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 기구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고, 권익옹호를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은 편이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물질적, 심리적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지원을 조금이나마 메꾸어보고자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하여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센터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의 노력이 몇 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심석순(201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48호 187-218
- 김강원(2015), 장애인 학대사건 해결의 어려움과 학대방지입법의 필요성,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2015년 활동보고회 자료집 - 장애인 학대사건, 장애인인권교육의 현황 43-54
-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장애인 등록 현황
- 대구광역시(2016), 2015년 장애인 등록 현황





부 록

장애차별 진정사건
통계자료



장애차별 진정사건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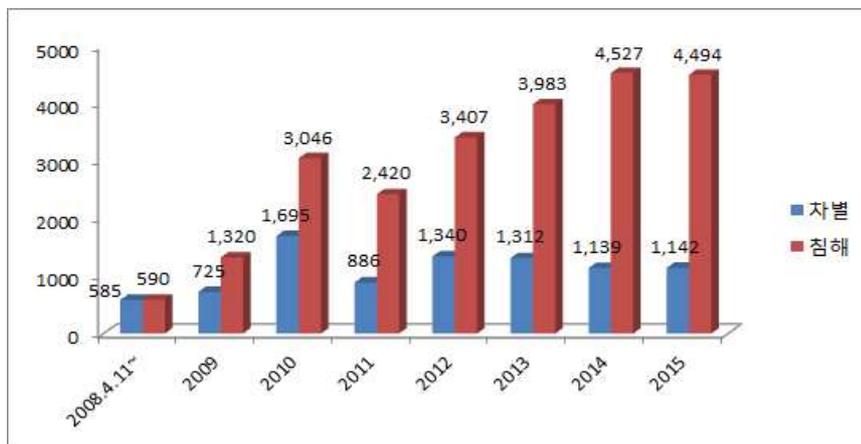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32,611	8,824	23,787 (14,921)	
2008.4.11.~	1,175	585	590 (3)*	
2009	2,045	725	1,320 (595)	
2010	4,741	1,695	3,046 (1,350)	
2011	3,306	886	2,420 (1,534)	
2012	4,747	1,340	3,407 (2,067)	
2013	5,295	1,312	3,983 (2,649)	
2014	5,666	1,139	4,527 (3,374)	
2015	5,636	1,142	4,494 (3,348)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정신장애인 사건분류는 별도 없음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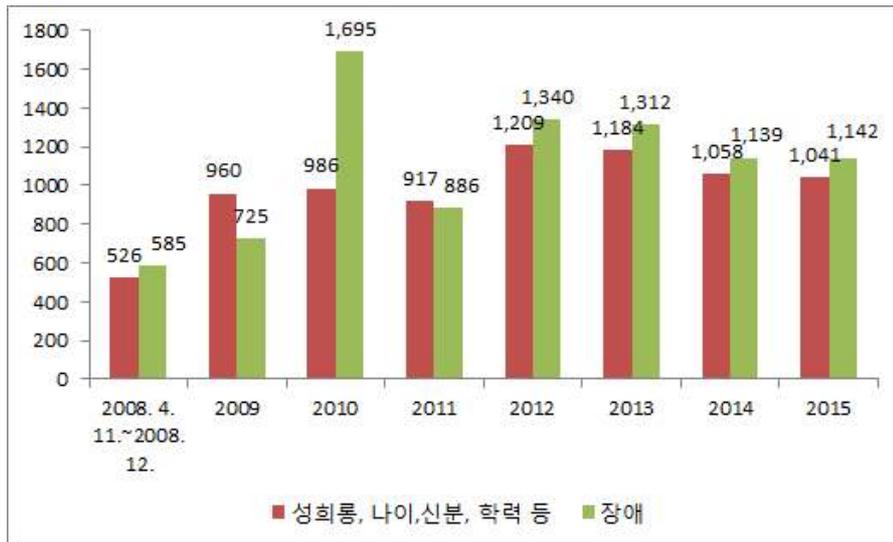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5.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5. 12.	진정건수	20,974	11,497	9,477
		비율(%)	100.0	54.8	45.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5. 12.	진정건수	16,705	7,881	8,824
		비율(%)	100.0	47.2	52.8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3	1,041	1,142	
	비율(%)	100.0	47.7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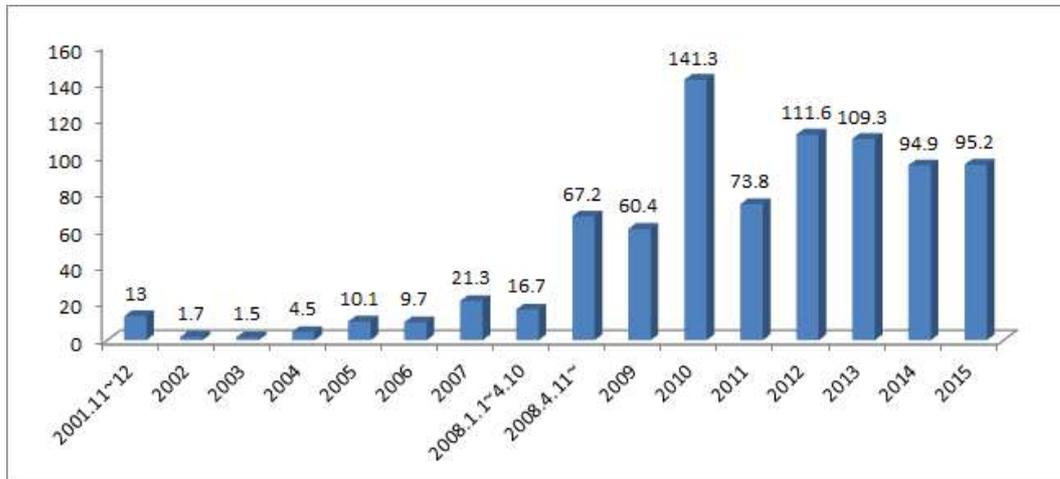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5.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합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9,447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2
	월평균	56.1	13	1.7	1.5	4.5	10.1	9.7	21.3	16.7	67.2	60.4	141.3	73.8	111.6	109.3	94.9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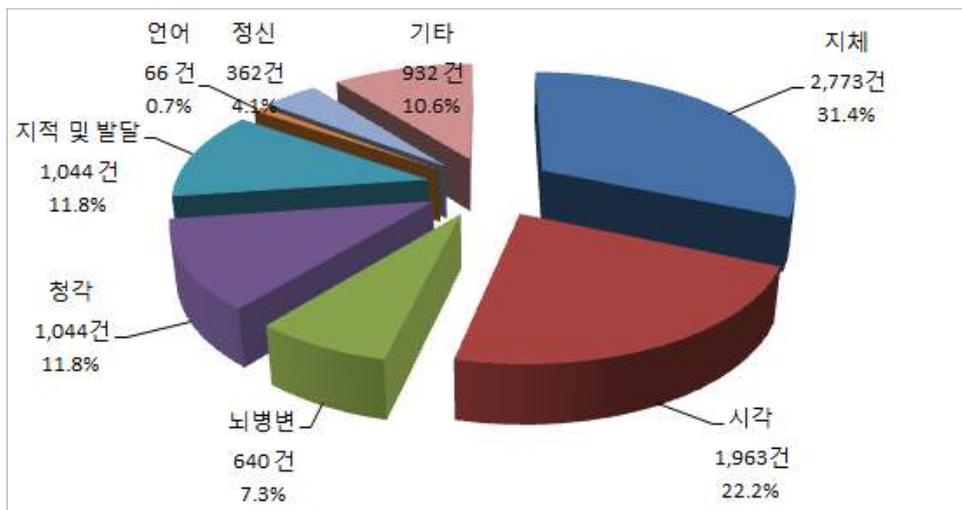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5.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및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8,824	2,773	1,963	640	1,044	1,044	66	362	932
	비율	100.0	31.4	22.2	7.3	11.8	11.8	0.7	4.1	10.6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4.9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5	8.1	24.2	0.9	5.4	5.4
2012	건수	1,339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4	6.5	10.6	17.3	1.0	3.5	10.1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7	0.5	3.8	10.6
2014	건수	1,140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4	8.1	9.8	9.1	1.1	4.8	6.2
2015	건수	1,142	334	436	93	101	100	5	30	43
	비율	100.0	29.2	38.2	8.1	8.8	8.8	0.4	2.6	3.8
등록 장애인 구성비 ²⁾	인원 (천명)	2,494	1,296	253	252	253	203	18	97	122
	비율	100.0	52.0	10.1	10.1	10.1	8.1	0.7	3.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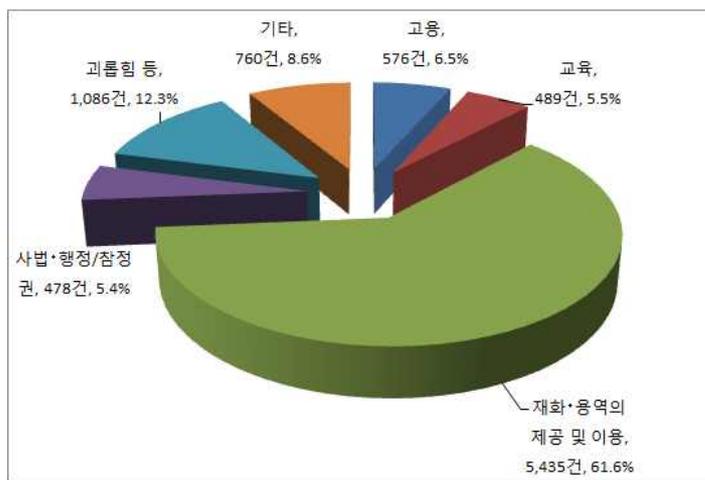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2)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4. 12.(보건복지부)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전체	접수	8,824	576	489	5,435	1,313	627	1,147	643	1,400	305	478	1,086	760
	비율	100.0	6.5	5.5	61.6	14.9	7.1	13.0	7.3	15.9	3.5	5.4	12.3	8.6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6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	8.2	5.7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2	69	55	729	126	82	124	99	286	12	37	121	131
	비율	100.0	6.0	4.8	63.8	11.0	7.2	10.9	8.7	25.0	1.1	3.2	10.6	11.5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11.25. ~ 2008.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2013. 1. 1. ~ 2013.12.31.	2014. 1. 1. ~ 2014.12.31.	2015. 1. 1. ~ 2015.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8년 (2008. 4.~ 2015. 12.)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2	8,824
	월평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2	94.9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729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7.8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611
	월평균	1.6	7.0	4.1	4.6	5.2	8.0	3.8	5.5	4.6	6.6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29	5,642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0.8	60.7
사법·행정 /참정권	전체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7	478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1	5.1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017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0	21.7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8,824	206	57	49	94	43	10	34	83	
고용	576	206	57	49	94	43	10	34	83	
교육	489	68	78	51	55	166	4	11	56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1,313	451	232	153	91	210	11	53	112
	보험·금융	627	149	104	61	115	98	7	52	41
	시설물 접근	1,147	795	171	62	16	13	1	3	86
	이동 및 교통수단	643	339	106	48	20	35	4	2	89
	정보통신·의사소통	1,400	33	900	17	317	26	4	1	102
	문화·예술·체육	305	60	24	16	58	118	-	7	22
사법·행정	331	68	78	14	39	69	4	17	42	
참정권	147	55	26	2	3	4	-	2	55	
괴롭힘 등	1,086	279	64	106	202	196	12	128	99	
기타	760	270	123	61	34	66	9	52	145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가. 고용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576	218	78	54	13	24	129	3	57
	비율	100.0	37.8	13.5	9.4	2.3	4.2	22.4	0.5	9.9
	공공	187	101	7	27	10	5	16	2	19
	민간	389	117	71	27	3	19	113	1	38
2008	합계	41	19	5	6	1	0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0.0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0	1	1	1
	민간	23	8	4	4	0	0	7	0	0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0	5	1	0	2	0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0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0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0.0	11.0
	공공	30	11	0	8	3	1	4	0	3
	민간	52	16	12	5	0	2	11	0	6
2011	합계	64	23	10	4	1	0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0.0	26.6	1.6	12.5
	공공	14	8	0	0	0	0	2	1	3
	민간	50	15	10	4	1	0	15	0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0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0.0	9.8
	공공	34	18	4	2	1	2	4	0	3
	민간	48	15	6	3	0	3	16	0	5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0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0.0	16.0
	공공	29	15	1	4	1	0	2	0	6
	민간	46	13	9	2	0	1	15	0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0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0.0	4.3
	공공	24	16	1	4	2	0	1	0	0
	민간	70	22	10	7	1	5	21	0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0	14
	비율	100.0	29.0	11.6	4.3	1.4	13.0	20.3	0.0	20.3
	공공	18	11	0	2	1	2	0	0	2
	민간	51	9	8	1	0	7	14	0	12

나. 교육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489	68	52	92	39	85	32	121
	비율	100.0	13.9	10.6	18.8	8.0	17.4	6.5	24.7
	공공	334	29	28	46	28	82	26	95
	민간	155	39	24	46	11	3	6	26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5,435	1,313	627	1,147	643	1,400	305	478
	비율	550.4	24.2	47.8	182.9	56.1	217.7	21.8	100.0
	공공	2,207	605	54	508	357	481	202	450
	민간	3,228	708	573	639	286	919	103	28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54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1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41
	민간	258	87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35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4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79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1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3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90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3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68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3
2014	합계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1.0	16.0	24.5	2.8	100.0
	공공	224	67	8	49	43	48	9	48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13
2015	합계	729	126	82	124	99	286	12	37
	비율	100.0	17.3	11.2	17.0	13.6	39.2	1.6	100.0
	공공	187	37	8	38	35	65	4	35
	민간	542	89	74	86	64	221	8	2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086	21	30	24	172	129	628	82
	비율	100.0	1.9	2.8	2.2	15.8	11.9	57.8	7.6
	공공	144	6	2	4	24	5	88	15
	민간	942	15	28	20	148	124	540	67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08	합계	42	0	0	3	5	7	26	1
	비율	100.0	0.0	0.0	7.1	11.9	16.7	61.9	2.4
	공공	2	0	0	0	0	1	0	1
	민간	40	0	0	3	5	6	26	0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0	0	4	0	12	1
	민간	87	0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0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0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0.0	21.0	15.2	47.6	8.6
	공공	19	0	1	0	4	1	12	1
	민간	86	4	3	0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0	10.8
	공공	17	1	0	0	2	0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0	2	1	0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0	2	4	2	8	0
	민간	105	0	3	4	13	18	59	8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비율	100.0	1.7	2.5	0.8	19.0	8.3	59.5	8.3
	공공	22	0	0	0	3	0	17	2
	민간	99	2	3	1	20	10	5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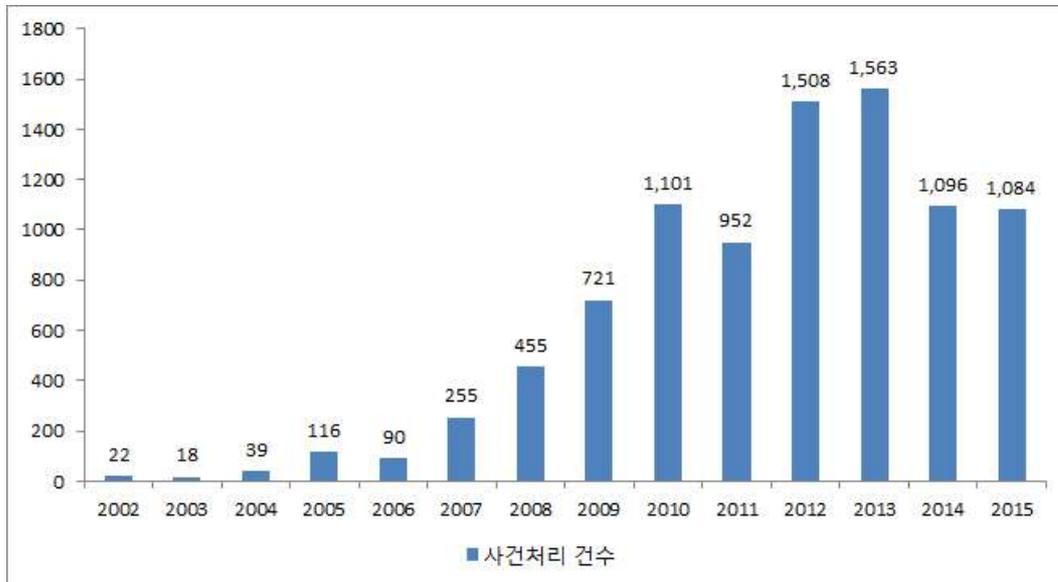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5.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7,937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4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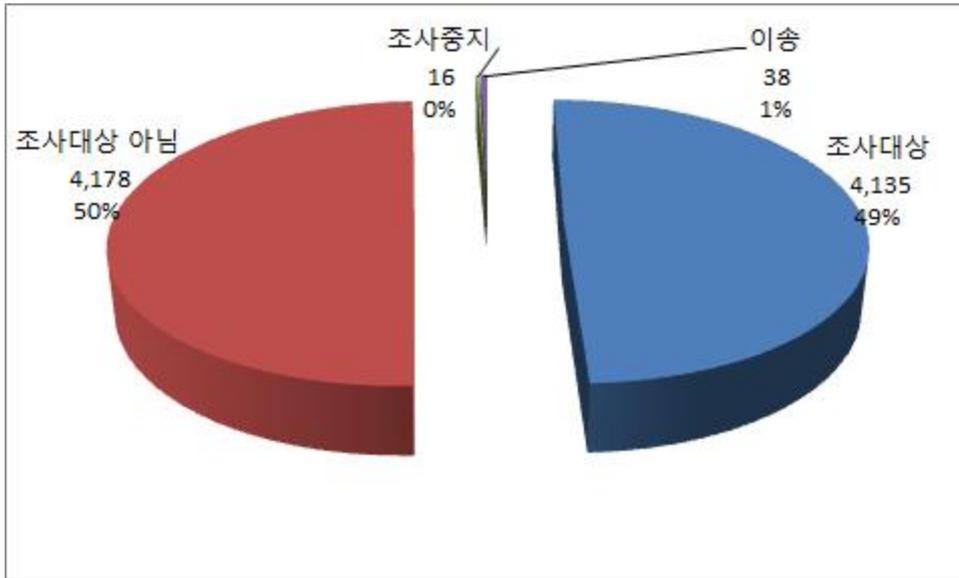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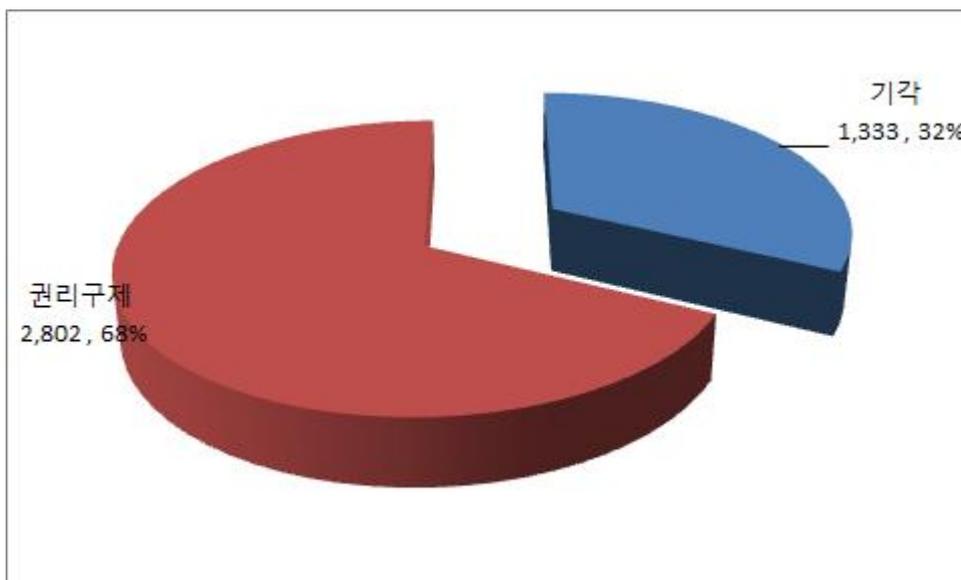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조사중 해결*** (기각)				
합계	8,367	4,135	2,802	353	2	325	2,122	1,333	4,178 (2,915)	16	38
구성비 (%)	100.0	100.0	100.0	12.6	0.1	11.6	75.7		32.2		
			67.8								
		49.4							49.9	0.2	0.5
2008년	347	156	92	14	-	11	67	64	190 (116)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5.2	-	12.0	72.8		41.0		
			59.0								
		45.0							54.8	0.3	-
2009년	716	355	209	8	-	47	154	146	351 (236)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3.8	-	22.5	73.7		41.1		
			58.9								
		49.6							49.0	0.6	0.8
2010년	1,101	417	262	28	1	56	177	15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0.7	0.4	21.4	67.6		37.2		
			62.8								
		37.9							60.2	0.5	1.4
2011년	952	566	361	124	-	32	205	205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4.3	-	8.9	56.8		36.2		
			63.8								
		59.5							40.0	0.1	0.4
2012년	1,508	890	701	116	-	20	565	189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5	-	2.9	80.6		21.2		
			78.8								
		59.0							40.8	0.1	0.1
2013년	1,563	807	643	29	-	79	535	164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4.5	-	12.3	83.2		20.3		
			79.7								
		51.6							48.3	-	0.1
2014년	1,096	528	319	17	1	61	240	209	560 (452)	3	5
구성비 (%)	100.0	100.0	100.0	5.3	0.3	19.1	75.2		39.6		
			60.4								
		48.2							51.1	0.3	0.5
2015년	1,084	416	215	17	-	19	179	201	662 (560)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7.9	-	8.8	83.3		48.3		
			51.7								
		38.4							61.1	-	0.6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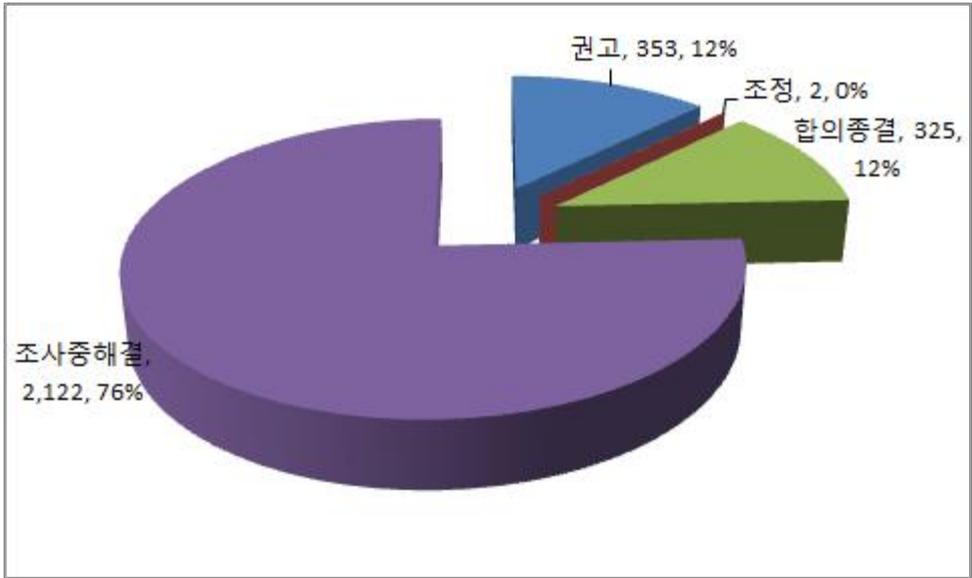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증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8,367	4,135	353	2	325	2,122	1,333	4,178 (2,915)	16	38
	비율(%)	100.0	100.0	67.8				32.2			
				49.4					49.9	0.2	0.5
고용	건수	554	189	11	-	37	21	120	360 (284)	4	1
	비율(%)	100.0	100.0	36.5				63.5			
				34.1					65.0	0.7	0.2
교육	건수	471	216	12	-	35	119	51	251 (211)	-	3
	비율(%)	100.0	100.0	76.5				23.6			
				46.1					53.3	-	0.6
재화·용역	건수	5,114	2,969	285	2	174	1,727	781	2,131 (1,581)	9	5
	비율(%)	100.0	100.0	73.7				26.3			
				58.1					41.7	0.2	0.1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465	237	23	-	4	140	70	227 (149)	-	1
	비율(%)	100.0	100.0	70.5				29.5			
				51.0					48.8	-	0.2
피로힘 등	건수	1,763	523	22	-	75	115	311	1,209 (690)	3	28
	비율(%)	100.0	100.0	40.5				59.4			
				29.7					68.5	0.2	1.6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및 이행 현황(2008.4.11.~2015.12.31.)

1) 적용법률에 따른 인용(권고) 사건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권고 사건 수	353	11	12	285	23	22
국가인권위원회법	16	1	2	7	2	4
장애인차별금지법	337	10	10	278	21	18

2) 각 부문별 권고이행률 비교

(단위: 건)

구 분	총계 (권고건수)	권 고 이 행 상 황				권고이행률 (%)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검토중		
합계	353	322	24	5	2	95.1	
합계	공공부문	158	143	9	4	4	95.7
	민간부문	195	179	15	1	-	95.6

* 권고이행률 산정식 = {이행+(일부이행×0.5) / (전체권고건수-검토중)} × 100

**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공립학교,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사립학교, 개인을 의미함.

*** 이행: 위원회에 정식 통보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용처리함.

**** 검토중 : 권고수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중.



4.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표 16> 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19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20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21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붙임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5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5)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범·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헌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수희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실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경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 사회 연계 강화, 공격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제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전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 의 “20.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5)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 고용보장 지원체계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 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5)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5),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붙임2. 장애차별 진정사건 위원회 권고현황(2008.04.11~2015.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불수용 (시정명령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지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 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일부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중앙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중앙도서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	2008.12.22.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복지 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08.12.26.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6.13.	수용
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정08760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0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리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	2014.11.17.	수용
21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2014.12.16.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 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 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일부이행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인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27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9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제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제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심신 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 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제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31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할 경 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제발방 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 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제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 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제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속히 발 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 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제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 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000 등 2건)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족카 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 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 용할 것, 제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과 제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8.2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 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 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 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39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2010.10.20.	일부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41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련관 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 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거나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 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00 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 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 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 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 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 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 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 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 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4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 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 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 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 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 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17.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 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 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 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 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 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 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5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 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 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 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5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 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 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 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 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 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5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청 민 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 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는 경사 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하 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 을 권고	2011.8.22.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 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 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계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 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발목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애계,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애계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 예계, 진정인에 대한 공제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6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3.23.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90건) 일부 수용 (2건)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72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77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11.29.	불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과 관련된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시각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할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탈의실내 사물함·헬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 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을 권고	2013.5.2.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 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축지도 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접이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88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 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 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위하기이 드라인'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 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진 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 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위 도 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 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 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 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어이용 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 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실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 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차관기에 시각장애 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의 중앙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검토중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련하여 0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수 용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란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육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구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장애인에게,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여 공용 설치에 의한 차 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0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 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102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 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10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10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0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 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10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히 하 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10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 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 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 출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10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 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들 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	2008.12.3.	수용
1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 출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1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 선거 장애인 평등 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시각장애 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1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1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1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등을 권고	2011.1.6.	수용
1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11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	2011.6.7.	수용
1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 장의 폭행 등 인권 침해 (11진정0440300)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매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2012.2.13.	수용
1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 당노동강요 및 금 전착취 (12진정02028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1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 험 시 장애인 편의 조치 소홀 (12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 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 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 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	2013.11.12.	수용
12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 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병 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30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 00요양원에서 발 생한 끝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 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 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간호사 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 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1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 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 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등학 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 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1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 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체험휴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 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 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 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 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 고	2015.11.19	검토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 인 쇄 | 2016년 4월

| 발 행 | 2016년 4월

| 발행인 | 권 혁 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주 소 | (41939)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 전 화 | (053) 212-7000 | F A X | (053) 212-700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참디자인

| 전 화 | (053) 256-6695 | F A X | (053) 256-6669

| ISBN | 978-89-6114-487-2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6년 대구경북지역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2016년도 발달장애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과정 : 「발달장애」, 「사회복지」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2. 과정개요

● 교육일정

- 기본과정(발달장애, 사회복지): 2016. 5. 25.(수) ~ 5. 27.(금)(3일 20시간, 비합숙)
- 전문과정(발달장애): 2016. 6. 22.(수) ~ 6. 24.(금)(3일 20시간, 비합숙)
- 전문과정(사회복지): 2016. 7. 6.(수) ~ 7. 8.(금)(3일 20시간, 비합숙)
- 심화과정(발달장애, 사회복지): 2016. 9. 22.(목) ~ 9. 23.(금)(2일 13시간, 비합숙)

● 교육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지하 1층)

● 교육인원 : 각 분야 30명 내외(1분야만 이수가능, 중복지원 시 선발배제)

● 신청자격

1) 발달장애분야

- 발달장애 관련 기관·시설·인권시민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영리목적이 아닌 사람 중 인권강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 관련 기관·시설·인권시민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우선 선발)
- 영리목적이 아닌 사람 중 인권강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기간 : 2016. 4. 1.(금) ~ 4. 30.(토)

● 신청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 교육안내 → 게시물 참조

●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053-212-7005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700-732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대표전화 국번없이 1331 팩스 (053) 212 7007
www.humanrights.go.kr blog.naver.com/humandg